

『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홍 태

나. 제안이유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목적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명료화함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로 이해가 쉽도록 함(안 제2조)

○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확대(안 제3조)

- 현행 :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
- 개정 :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, **1.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**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에 1.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